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

-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상호명(가칭) :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 ▲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
- ▲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25.6월중(잠정)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화)부터 26일(수)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소소뱅크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실더스, 피노텍
포도뱅크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흥록, 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한국소호은행	한국신용데이터,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AMZ뱅크	추후 확정 예정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고내용 참조)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6월, 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시에는 2024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24.11.29일 발표한 보도자료 별첨에 첨부된 배점표와 동일한 내용)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산업국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이진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953)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최동우 (02-3145-802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평가항목	평가내용	'15년	'19년	'24년
①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	100	150
자본금 규모	▶충분한 자본금 보유 여부	60	40	50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소요되는 자금조달의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10	60	100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0		
②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	100	50
대주주 적격성	▶주주의 소유규제 등 법률상 요건 적정성	-	-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합성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산업 효율화 기여	100	100	50
	▶금융과 정보통신의 융합 촉진 혁신적			
③ 사업계획(혁신성)		350	350	350
사업계획의 혁신성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및 실현가능성	250	250	200
	▶경쟁 촉진			100
금융 발전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 발전기여	50	70	50
해외 진출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	50	30	
④ 사업계획(포용성)		140	150	200
사업계획의 포용성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등 공급 및 실현가능성	100	120	120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가능성	-	-	50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부합 여부	-	-	-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소비자보호체계·조직 구성계획	40	30	30
⑤ 사업계획(안정성)		210	200	200
사업계획의 안정성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 가능성	50	100	100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	40	25	25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수익추정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수익전망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40	25	25
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	-
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계·조직의 구성계획의 적정성	40	25	25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이사회 등 구성계획의 적정성(지배구조법 등)	-	-	-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 적정성	▶이사회·경영진·감사인 등의 구성 및 견제기능 등	40	25	25
	▶내부통제체계 구축의 적정성(임직원의 법규준수 등)			
기타	▶금융당국 감독·검사의 법적 장애 유무 등	-	-	-
⑥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	100	50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전문인력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등	-	20	10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업무공간 및 정보차단벽의 적정성 등	-	20	10
전산체계 등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및 보안시스템 적정성 등	100	60	30
※ 외국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포함) 신청시 은행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	-	-
합 계		1,000	1,000	1,000